



중국 행정심판 제도의 주요 내용

정보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실

I. 행정심판법의 입법배경

중국의 행정구제 입법으로는 행정소송법(1989년 4월 4일 시행)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행정심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심판조례(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条例; 1990년 12월 24일 발표, 1991년 1월 1일 시행, 이하 '구 조례'라 한다)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1999년 10월 1일부터는 구 조례를 대체하는 정식입법인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심판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 이하 '행정심판법'이라 한다)을 시행하였으며, 2007년 5월 27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심판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实施条例; 이하 '실시조례'라 한다)가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심판법은 총 7

개장 43개 조문, 실시조례는 총 7개장 66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심판법과 실시조례를 바탕으로 중국 행정심판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 중국 행정심판법의 주요 내용

1. 행정심판의 정의와 특징

행정심판은 국가기관의 행정행위가 개별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나 법률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행정행위에 대해 재심(復議)하는 것을 가르킨다¹⁾. 행정심판법 제1조는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개별 국민, 법인 및



1) 원문은 '행정복의(復議)법'으로 직역하면 '행정재심법'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우리의 입법례에 따라 행정심판법으로 표기하였다.

2) 胡錦光·于川, 行政法与行政诉讼法概论,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7쪽.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를 시정 및 방지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고 그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내부적으로는 행정기관 내부의 자체감독의 성격을 지니며 외부적으로는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구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기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최종심리가 아니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5조).

2. 중국 행정심판의 기본 원칙³⁾

행정심판법 제4조는 행정심판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합법 원칙

행정심판의 내용 및 절차는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향유하고 있는 기관이 그 직책범위 내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하며(행정심판 주체의 합법성),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순서 및 형식에 부합하게 행정심판을 진행하고(절차의 합법성), 법률, 법규, 규장 및 상급 행정기관의 규범성 문건만을 행정심판의 판단근거로 하는(근거의 합법성)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⁴⁾.

(2) 공정 원칙

행정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나 신청인 일방에 유리하게 판단할 수 없다.

(3) 공개 원칙

행정심판의 수리, 심리 및 결정은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국가 기밀에 관련된 부분이나 개인 사생활 및 상업(영업) 비밀인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즉시 원칙(효율 원칙)

행정심판의 효율을 위하여 행정심판의 각 절차는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안건의 수리, 심리 및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각 절차는 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한을 준수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5) 편리(便民) 원칙

편리원칙은 '편민', 즉 국민을 편리하게 하는 원칙이다. 행정심판이 행정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만큼 국민들이 행정심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첫째, 행정심판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 현(縣)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부서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소속 인민정부나 상급 주관 부서 중 선택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3) 胡锦涛·莫于川, 行政法与行政诉讼法概论,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10-213쪽.

4) 胡锦涛·莫于川, 行政法与行政诉讼法概论,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9-210쪽.

할 수 있다(제12조 전단).

둘째, 행정심판을 서면이 아닌 구술형식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심판법 제11조 및 실시조례 20조는 서면 신청 외에 구술형식의 신청도 인정하고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의 기술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행정심판은 신청비용이 없다. 행정심판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심판은 별도의 신청비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행정심판 제도의 기본제도

(1) 상급심판 제도(一级复议制度)

상급심판제이란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행정기관의 차상위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다시 상위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소송을 통하도록 하고 있다.

(2) 서면심사 제도

행정심판법 제22조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를 하며 신청인이 신청하거나 심판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조직이나 개인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피신청인 및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의 행정심판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모든 절차가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형식을 이용할 수 있다.

(3) 조정의 배제

행정심판의 경우 심판기관의 조정을 통하여

심리를 종결시킬 수 없다. 특히 중국은 민사 사건에서 조정이나 화해 등의 방식으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행정심판은 공권력을 향유하는 행정기관과의 분쟁이기 때문에 조정의 방식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4) 행정심판 기간 중 집행의 지속

행정심판법 제21조는 행정심판 기간 중에도 집행은 중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① 피신청인이 집행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 기관이 집행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신청인이 집행의 중지를 신청하고 심판기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집행의 중지를 결정하는 경우, ④ 법률에 의하여 집행을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진행 중 해당 행정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피신청인의 입증책임

행정심판 중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즉 행정심판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이 해당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법 제23조를 살펴보면 행정심판 기관은 행정심판이 수리되면 7일 내에 행정심판 신청서(혹은 녹취본)의 부분(副本)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며, 피신청인은 이를 접수한 10일 이내에 해당 행정행위의 증거, 법적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행정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바(제28조 4항)

피신청인이 행정심판 중의 입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인다.

4. 행정심판의 범위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 행정심판의 범위는 행정행위의 범위와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심판의 범위는 제한이 있으며, 특히 구조례의 경우 행정심판의 범위를 매우 소극적으로 규정하였으나 행정심판법은 구조례보다 그 범위를 넓게 규정하여 행정심판의 효용성을 제고하였다.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심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체적 행정행위(제6조)

- ① 행정기관의 경고, 벌금, 불법 소득 및 재산의 몰수, 생산중지 명령, 허가증의 정지 및 취소, 면허의 정지 및 취소, 행정 구류 등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 ②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의 동결, 압류 등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 ③ 허가증, 면허, 자질(資質)⁵⁾, 자격증 등의 증서의 변경, 정지 및 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④ 토지, 광산, 수류(水流), 산림, 산령(山嶺), 초원, 황무지, 모래사장, 해역 등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에 대한 행정기관

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⑤ 행정기관이 합법적 경영권 행사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 ⑥ 행정기관이 농촌 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여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 ⑦ 행정기관이 위법한 자금모집, 재물징수, 비용할당 및 기타 위법적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⑧ 법정 조건을 만족하여 행정기관에 허가증, 면허증, 자격증 등을 신청하였거나 행정기관에 심사비준 혹은 등기를 신청하였는데 행정기관이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 ⑨ 행정기관이 인신권, 재산권 및 교육의 권리 등의 보호를 소홀히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⑩ 행정기관이 법률로 규정하는 부양금, 사회보험금이나 최저생활보장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⑪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기타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2) 추상적 행정행위(제7조)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① 국무원 부서의 '규정(規定)', ② 현급 이상의 각 지방정부 및 행정부문의 규정, ③ 향(鄉), 진(鎭) 인민정부의 규정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5) 자질(資質)란 자격증과 유사한 개념인데, 주로 개인이 아닌 회사 등 단위에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심사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국무원 각 부, 위원회 및 지방 인민정부의 '규장(規章)'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법률과 행정법규에 의해 처리한다. 중국에서 규정(規定)은 규범성 문건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고 규장(規章)은 국무원 및 지방정부가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성격을 지닌 문건만을 가르킨다.

즉, 규정은 비교적 포괄적인 범위를 가르키는 것으로 추상적 행정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반해 규장의 경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정된 것만을 의미한다. 행정심판법 제7조에서는 보편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장을 행정심판의 범위에서 배제함으로써 행정심판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⁶⁾.

(3) 행정심판을 배제하는 행정행위

첫째, 행정법규와 규장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은 주로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것으로 행정법규나 규장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는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대로 처리한다.

둘째, 내부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관 내의 국가 공무원이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소송을 통

해 해결한다.

셋째, 행정기관이 행한 민사 중재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5. 행정심판의 담당기관과 관할

행정심판 기관이란 법률에 의거 행정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보통 해당 행정행위를 한 기관의 상위 기관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분적으로 직접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즉, 국무원 각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행위를 행한 각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4조), 이는 국무원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의 경우 상위 행정기관으로 차상위 행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이론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자신이 판단하는 모순이 있어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다⁷⁾. 역시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국무원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행정심판의 관할에 대해 정리하면, 첫째,



6) 이러한 추상적 행정행위는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도 해결할 수 없고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 및 보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 및 명령은 전국 인민대표자대회 상임위원회만이 폐지할 수 있고, 지방 인민정부 및 각 부서가 제정한 행정 규장이나 기타 보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 결의 및 명령은 상급 행정기관이나 동급 인민대표자대회 상임위원회만이 폐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12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7조 및 104조 참조.

7) 胡锦涛·莫于川, 行政法与行政诉讼法概论,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19쪽.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각 부서의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소속 인민정부나 상급 주관부서 중 선택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이는 앞서 말한 편리 원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방정부 각 부서의 행위에 불복하면 해당 부서가 속한 인민정부나 해당 부서를 감독하는 상위 주관 부서를 선택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 세관(海關), 금융, 국세, 외환관리 등 국가가 수직적 관리를 하는 행정기관과 국가 안전기관의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는 반드시 상급 주관 부서가 행정심판을 관할한다(제12조).

둘째, 지방 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는 상급 인민정부가 행정심판을 담당한다. 성이나 자치구가 법률에 의거 설립한 파출(派出) 기관에 속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파출기관이 행정심판의 권한을 가진다(제13조).

셋째, 국무원 각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에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한다(제14조, 전술).

넷째,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파출기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이를 설립한 행정기관이(제15조 1항), 정부 부처가 설립한 파출기관의 행정행위의 불복하는 경우는 이를 설립한 행정기관이나 동급의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제

15조 2항), 관련법률에 의해 행정권을 위임받은 조직의 경우 해당조직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정부나 부처 혹은 국무원 부서가(제15조 3항),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공동명의로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는 두 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이(제15조 4항), 행정기관이 해체된 경우 직권을 계수받은 행정기관이(제15조 5항) 행정심판을 관할하게 된다.

행정심판을 접수한 행정기관이 앞서 말한 규정에 따라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는 접수후 7일 이내에 관할 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제18조).

6. 행정심판의 참여자

행정심판의 참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및 제3자로 나눌 수 있다.

(1) 신청인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여기는 개별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국외 조직 및 무국적자도 중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국내인과 동일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41조).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에 의해 권익을 침해받은 본인이 본인의 명의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친속(親屬)⁸⁾이, 본인이 금



8) 일반적으로 근친을 가르키며 보통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및 외손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치산자이거나 한정치산자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법인이나 조직이 해산한 경우는 해당 조직을 승계한 조직이 이를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다(제10조).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을 말한다. 만일 행정기관과 관련 법률에 의거 행정권을 위임받은 조직의 공동행위인 경우 두 기관 모두 피신청인이 되며, 그 외 수권 없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행한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피신청인이 된다⁹⁾. 또한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중 하급 행정기관이 설립하고 상급 행정기관이 비준한 경우 이를 비준한 상급 행정기관이 피신청인이 된다¹⁰⁾.

(3) 제3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행정행위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제3자로서 행정심판에 참여할 수 있다(제10조). 해당 행정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기관에 제3자 참여를 신청하고 행정심판 기관이 이를 받아들이면 행정심판 절차에 제3자로서 참여하게 된다¹¹⁾. 실제 행정심판 과정 중에서 제3자는 주로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치안, 식품 위생, 약품 관리 사

건에서 처분을 받은 자와 피해자 중 일방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일방이 제3자로 참여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은 식품 위생, 약품 관리 관련 행정심판에서 신청인의 이해 관계인이 제3자로 참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어떤 상점의 식품이 위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는 곧 해당 상품을 생산한 생산자가 위생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점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생산자는 제3자로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유형에 해당한다.

세 번째 유형은 행정처분을 받은 다수의 당사자 중 일부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다른 당사자는 제3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이다.

네 번째 유형은 권리 확인의 행정심판 사건에서 상대방이 제3자로 참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갑을간 토지 사용권 확인에 관련된 행정심판에서 행정기관이 갑의 권리를 인정하면 을은 당연히 사용권을 잃게 되므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을은 제3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다섯 번째, 실무적으로 다수 행정기관과 관련이 있는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받은 행정기관 이외의 관련 행정기관들이 제3자로 행정



9) 실시조례 제12조.

10) 실시조례 제13조.

11) 실시조례 제9조 참조.

심판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여섯 번째, 행정기관의 월권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합법적으로 권리를 향유하는 기관이 제3자로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7. 행정심판의 절차

(1) 행정심판의 청구 및 수리

행정심판은 ① 규정된 신청인 자격에 부합하고, ② 행정행위와 신청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성립하며, ③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으며, ④ 법정 기한 내에, ⑤ 행정심판의 범위에 부합하며, ⑥ 접수한 행정기관의 직책범위에 부합하고, ⑦ 기타 다른 기관에 동일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¹²⁾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청구기한은 원칙적으로 행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이다(제9조). 그러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르고, 불가항력에 의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는 장애가 제거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① 성명, 성별, 연령, 신분증 번호, 소속 단위, 주소, 우편 번호 및 법정 대리인 등 청구인의 기본사항, ② 피청

구인의 명칭, ③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주요 사실 관계 및 이유, ④ 신청인의 서명이나 인장, ⑤ 신청날짜¹³⁾를 기재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행정심판은 서면신청이 원칙이나 구술 형식도 인정하고 있으며(제11조), 구술 형식인 경우도 앞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¹⁴⁾.

행정심판 신청을 접수한 기관은 5일 이내에 심리를 통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제17조), 만일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수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관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관할 기관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5일 내의 합리적 기간을 두어 보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심리기간으로 포함하지 않는다¹⁵⁾. 행정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심판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상급 기관은 수리를 명령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 이를 직접 수리할 수도 있다(제20조).

(2) 행정심판의 심리 및 결정

1) 심리 전 준비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 기관은 행정심판 신청서를 수리하고 7일 내에 신청서



12) 실시조례 제28조.

13) 실시조례 제19조.

14) 실시조례 제20조.

15) 실시조례 제29조.

혹은 신청 녹취본 부분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접수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제출한다. 신청인과 제3자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국가 기밀, 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 자료가 아니라면 행정심판 기관은 이들의 열람을 거절할 수 없다.

2) 심리 내용

행정심판은 구체적 행정행위는 물론 추상적 행정행위도 병합하여 함께 심리할 수 있다.

3) 심리 방식

심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기타 조사나 의견 청취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4) 심리 기한

심리 기한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이다. 사안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60일 이하로 규정하면 그에 따르고 만일 사안이 복잡하여 60일 내에 심리가 불가능한 경우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이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제31조). 행정심판 결정 이전에 신청인이 행정심판 청구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 이유를 설명하고 심판기관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써 행정심판 절차는 종료된다(제25조).

5) 행정심판의 결정

행정심판의 결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유지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행위의 유지를 결정한다. 둘째, 이행 결정이다. 피신청

인이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 기관은 기한을 두어 의무를 이행할 것을 결정한다. 셋째, 취소, 변경 및 위법 확인의 결정이다.

① 주요 사실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② 법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③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경우, ④ 행정기관의 월권이나 권한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⑤ 행정행위가 명확히 부당한 경우는 해당 행정행위의 변경, 취소 및 위법성 확인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넷째, 배상 결정이다. 해당 행정행위의 취소 및 변경을 결정하는 경우 이와 함께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섯째, 추상적 행정행위 대한 결정이다. 구체적 행정행위와 병합하여 추상적 행정행위를 심리한 경우 만일 행정심판 기관이 처리할 권한이 있으면 30일 내에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권한이 없는 경우 7일 내에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이송하고 해당 기관은 60일 내에 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제26조).

이러한 심판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률 효력은 결정 송달 즉시 발생한다.

(3) 집행

행정심판의 결정이 나오면 피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하면 행정심판 기관이나 상급 행정기관이 이행을 명령한다(제32조). 구체적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결정의 경우, 해당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강제집행하거나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구체적 행정행위를 변경

하는 결정의 경우, 행정심판 기관이 강제집행하거나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한다(제33조).

Ⅲ. 소결

중국의 행정심판 제도는 1991년 구 조례를 시행하면서 도입되어 1999년에는 정식입법인 행정심판법을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년에 가까운 시행 기간을 통하여 중국의 행정심판 제도는 대체로 규범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중국 사법활동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던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기한에 관한 규정들을 매우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점과 복잡한 행정기관 사이의 관할의 문제들 역시 명확히 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추상적 행정행위를 포함하지는 하였으나 그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행정규장을 행정심판의 범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행정권이 매우 강력한 중국의 상황에서 행정심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인 식

(중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원)